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미세먼지법)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기환경정책과 - 총괄, 법령개정사항) 044-201-6879, 6866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기환경정책과 - 비상저감조치) 044-201-6872, 6871
기후에너지환경부 (교통환경과 - 자동차 운행 제한) 044-201-6929, 6931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기관리과 - 건설공사장 관리) 044-201-6904, 6914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기환경정책과 - 미세먼지 간이측정기) 044-201-6872, 6871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기관리과 -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) 044-201-6908, 6906

제18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시·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
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,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
3.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·조정
4.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,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·대상지역·대상차량·발령시간·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